#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9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양부남・염태영・임미애

정진욱 • 박균택 • 이상식

박해철 • 이해식 • 허성무

박홍배 • 박희승 • 강준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위한 조사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21년 5월 27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3년의 조사기간 및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6일 현재 5,821건의 진실규명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남은 약 9개월의 조사기간으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도래로 과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연장도 필요한 상황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또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 연장의 필요성도 있음(안 제36조의2 신설).

다만,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과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위원회가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조사로 인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위원회 소속 일부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그 외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호).

#### 법률 제 호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직원의 임명 제한) ① 위원회 직원은 공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이하 "인적사항"이라한다)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하기 전에 임명대 상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명대상자를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장은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해당 직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자일 경우에는 임명권자에게 직권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면직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0 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제25조에 따른 조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실규명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	<b>4</b>		
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	「국가재정법」 제6조		
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			
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생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		
략)	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4. <u>「공직선거법」</u>		
<u>법」</u> 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			
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			
한다)로 등록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6조의2(직원의 임명 제한) ①		
	위원회 직원은 공정한 위원회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본		
	인의 성명, 직위, 얼굴(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공개하		
	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u>여야 한다.</u>		
	②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을 임		
	명하거나 임명 제청하기 전에		

임명대상자가 인적사항을 공개 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 인 결과 공개를 거부하거나 거 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는 해당 임명대상자를 임명하 거나 임명 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장은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해당 직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자일 경우에는 임명권자에게 직권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면 직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면직 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제17 조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임

   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직무를

-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 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u>3</u> 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 ② · ③ (생 략) <신 설>

	수행할 수 없는 자는 「국가공
	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	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
	과 같음)
	②
	<u>2025년 12월 31일까지</u>
	③ (현행과 같음)
제	25조(조사기간) ①
	<u>5</u>
	<u>년간</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36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
	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지 아니하고 제25조에 따르

조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